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28
----------	------

2016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16년 8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 라. 상정결과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류활동, 공연예술활동, 디자인 문화 확산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분야에서 세종문화회관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문화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출연 개요

- 1) 대상기관 :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 2) 관련법령 및 조례
 - 세종문화회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 서울문화재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립교향악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 서울디자인재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출연의 필요성

대 상 기 관	출연의 필요성
세 종 문 화 회 관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및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출연 필요
서 울 문 화 재 단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서 울 시 립 교 향 악 단	- 교향악단 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진흥기여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서 울 디 자 인 재 단	-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3) 주요 사업

대상기관	주요사업
세종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
서울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서울시립교향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활동 수행 -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서울디자인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진흥 사업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등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문화분야 4개 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 규정임.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10월 19일자 공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통보>를 통해 출자·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예산 편성 및 심의와 중복되지 않으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왔음.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문화분야 4개 재단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류활동, 공연예술활동, 디자인 문화 확산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4개 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과 시장제출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 함께 우리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328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류활동, 공연예술활동, 디자인 문화 확산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분야에서 세종문화회관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문화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2) 관련법령 및 조례

- 세종문화회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 서울문화재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립교향악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 서울디자인재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출연의 필요성

대 상 기 관	출연의 필요성
세 종 문 화 회 관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및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출연 필요
서 울 문 화 재 단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시 립 교 향 악 단	- 교향악단 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진흥기여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서 울 디 자 인 재 단	-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다. 주요 사업

대상 기관	주요 사업
세종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
서울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시립교향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활동 수행 -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서울디자인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진흥 사업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전하연 (☎ 2133-2527)